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

2024
02
의정
정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차

I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 3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6
-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II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3

-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15
-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18
-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1
-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23
- 태백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25

III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27

- 인천시의회, 인공어초 확대 방안 논의 29
- 대전시의회, 지역특화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3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4년 첫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개최 32

IV 최근 제·개정 법령 3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4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7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57

-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59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제5조제2항
..... 62



—
I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6.] [대전광역시조례 제6199호, 2024. 2. 16., 제정]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트윈”이란 현실의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와 동일하게 모사한 가상의 영역(이하 “가상공간”이라 한다)을 시각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디지털트윈 시스템”이란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체계를 말한다.
 - 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
 - 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모의훈련
 - 다.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3. “가상공간 구축”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제와 동일한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의 수집·가공”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보의 수집: 사물인터넷, 모바일 장비, 드론, 로봇, 위성장치, 기타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사용 및 활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

나. 정보의 가공: 수집된 정보가 디지털트윈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측정값 등 정보의 형식을 변경하는 것

5. “동기화”란 현실의 객체와 가상공간의

객체 간 상호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양자 간의 정보를 연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모의실험”이란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가상공간에서의 실험을 통해 기제(機制)의 작동과정에 대한 관찰 또는 원리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협력부서”란 가상공간 구축, 정보의 수집·가공, 동기화 등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각 소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 ① 시장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 방향

2.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체계) ①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의 수립
2.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유기적 운용을 위한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력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가상공간 구축,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동기화, 모의실험
2. 그 밖에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 중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④ 주관부서와 협력부서는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효과적·전문적·경제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트윈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

는 단체에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정보 보호 및 보안)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수집·가공·활용·저장되는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주관부서와 협력부

서에서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해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효과성 제고 등 고도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시행 2024. 2. 14.] [부산광역시조례 제7188호, 2024. 2. 14., 일부개정]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 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도시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입주자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영구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개선
 4.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5. 입주자의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6.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7.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9.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10.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거주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
4.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 사업

제8조(난방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구임대주택 세대당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사용 전기료·수도료·물이용부담금 등 공동관리비
 3.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용자 또는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정보의 제공,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공동작업장 운영 등 일자리 개발 사업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에 대한 상담 사업
4.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시장은 입주자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입주자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사업
4.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돌봄서비스 사업

제11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영구 임대주택 거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사업
3.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사업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2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시장은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사업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공간 확보 사업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사업

제13조(사업주체와의 협력)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6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건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개정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4. 2. 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업주체의 임직원
4. 입주자 대표
5.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대표
6.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구임대주택 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5.] [전라남도조례 제5935호, 2024. 2. 15., 제정]

이 조례는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전라남도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상어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관상어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상어산업의 생산·유통·판매 등 기반 구축
4. 관상어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5. 관상어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6. 관상어 판로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
7.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어업인 및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
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
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5. 관상어 관련 소비자 교육·체험·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사업
제7조(홍보)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민 등을 대

상으로 관상어 관련 교육 또는 홍보를 실
시할 수 있다.



II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8.]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58호, 2024. 2. 8., 제정]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기관에서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신청) 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2. 감독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독반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시흥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 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④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의 결과) ① 제6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수당) 감독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8.]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425호, 2024. 2. 8., 제정]

이 조례는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장려 및 주민 문화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차”란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2. “대여”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미술품의 범위) 임차·대여 대상 미술품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서화, 조각, 공예, 사진 등의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로 한다.

제4조(작가의 자격) 미술품 임차·대여 대상 작가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으로 한다.

1.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시전(개인 또는 단체) 1회 이상 참여자
2.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예

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자

제5조(미술품 임차·대여 심의위원회) ① 미술품 임차·대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술품 임차·대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술품 임차·대여 선정 심의 및 의결
 2. 임차 대상 미술품의 진위 여부 심의
 3. 임차·대여 가격 의결
 4. 작가의 문화예술 또는 지역 발전 공헌도 검토
 5. 그 밖에 미술품 임차·대여와 관련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제3조에 따른 분야와 관련된 예술단체 회원이나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제3조에 따른 분야별 작가
4. 그 밖에 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
- ⑤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술품 임차·대여 업무 담당 팀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술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에 관한 규정 준용) 위원회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본인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

결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수사, 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미술품 임차) ① 시장은 제3조의 미술품의 범위에 속하고,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작가의 미술품을 공고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할 수 있다.

- ② 미술품을 시에 빌려주고자 하는 작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시장은 전단에 따른 서류 등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③ 미술품의 월 임차료는 작가의 임차 희망가격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미술품 임차료 지급 기준표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
- 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의 심의 결과를 해당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⑤ 시장이 미술품을 임차할 때는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여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은 대여자가 전액 변상한다.
- ⑥ 시장은 지역 작가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과 다양한 작품 임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작가 1인당 임차할 수 있는 작품의 수량과 임차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미술품 대여) ①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제8조에 따라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또는 민간에게 대여할 수 있다.

- ② 미술품의 월 대여료는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
-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대여할 때는 대여자에게 미술품을 대여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대여하기 위해 민간 예술단체 등에 대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미술품의 임차·대여 선정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품의 심의를 위하여 작가 또는 소장자에

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임차할 미술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미술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시행규칙에 따라 미술품의 임차·대여 여부 및 적정 가격 등을 결정하고, 미술품 임차·대여 선정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의 취소) 시장은 임차·대여한 미술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임차·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작, 표절 등 미술품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임차·대여한 자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미술품 임차·대여 절차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임차·대여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미술품 임차·대여 가격 결정 기준을 비롯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5.]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90호, 2024. 2. 15., 제정]

이 조례는 보행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운영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남양주시장이 정한 지역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지원)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이

운영하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운영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민간활동 장려 등) 시장은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보행안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



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시행 2024. 2. 8.]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조례 제3082호, 2024. 2. 8., 제정]

이 조례는 속초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전기사 발굴
5. 그 밖에 시내버스 정책 홍보 및 서비

스 개선에 대한 제안

② 모니터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촉된 단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기) ①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촉 등 모니터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
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
한 경우
3. 전출 등으로 속초시내 소재 시내버스
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모니터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5.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거짓 사실
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6.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
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 활동) ①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전자우편, 서면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②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
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비보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 및 실적이 우수
한 모니터단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태백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4. 2. 8.]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조례 제2163호, 2024. 2. 8., 제정]

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태백시와 산업교육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계약학과”란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4. “산업체 등”이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태백시 등의 산업체를 말한다.

제3조(계약학과의 설치)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 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교육기관과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계약서에는 규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4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규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산업교육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조(계약학과 설치·운영 기간)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간은 시장과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조성(부지, 건물) 및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계약학과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등록금 및 기숙사비
2. 산업교육기관의 교수보직수당
3. 행정조교 인건비
4. 그 밖의 운영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기반조성(부지, 건물 등) 및 운영비는 산업교육 기관, 산업체 등과 서로 협의하여 운

영계약서(운영협약서)로 정한다.

제7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시장은 계약학과 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계약학과 유치를 위해 활동하는 각종위원(분과위원 등)에 대하여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 시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III
—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인천시의회, 인공어초 확대 방안 논의

지난 6일 어업인 생계 보호 위한 인공어초 확대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어업인들의 생계 보호와 지역 어업 발전을 위한 인공어초(해저나 해중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해양생물을 정착시키거나 끌어 모으고, 나아가 생물을 보호·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장시설) 확대 방안 논의가 있었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한민수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창호·김종배 인천시의원,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 단은송 인천시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박태환 옹진군 수산과장, 서운용 남시선단장 및 지역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영희 의원 주관으로 대청어민(남시선단)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와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산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해 어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수산 자원의 조성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어업과 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인천시 인공어초 시설 추진계획은 인천시 관할 해역 4곳에 대한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6억4천400만 원이다.

이 사업은 해역별로 1종의 어초 시설을 포함해 총 4종의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 추진 절차에는 적지 조사, 인공어초 추천, 어초관리위원회 개최, 공사설계 및 특허 협의, 사전 영향조사, 공사계약, 어초 제작, 어초 투하 및 공사준공 등이 포함된다.



대청어민(납시선단)들은 이전에도 대청도 해역 어로구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물살이 센 대청 어장에서 주요 포획 어종인 조피볼락의 생태환경 조성에 유리한 폐선 투하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인공어초 대비 폐선 투하 시 집어 효과성을 강조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이봉락 의원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의 조성은 우리 바다와 어업인들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민수 위원장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오국현 수산과장은 “어업인들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 검토해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대청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인공어초 시설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업인들의 생계 보호 및 지역 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첨부

대전시의회, 지역특화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 황경아 의원 주재로, 지역 특화산업 발전방향과 인력양성 정책 등 논의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 주재로 7일 의회 소통실에서 지역 경제 발전과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역특화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황경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동환 한국폴리텍Ⅳ대학(대전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이 주제발표를 하는 가운데, 우승한 한밭대학교 LINC 3.0 사업단장, 조현숙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이병권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이용환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단장, 임병화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장, 양영란 전략사업추진실 대학혁신 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양성과 근로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자리로, 지역특화산업의 현황과 방향, 인력양성 및 평생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를 보이며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양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경아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대전시만의 주력산업에 부합한 미래형 인재 양성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4년 첫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개최

- 외도 · 백록초등학교 어린이회 11명, 학부모 5명 참여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외도 · 백록초등학교 어린이회 11명과 학부모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첫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하였다.
- 올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년보다 2개월 일찍 시작하였다.
- 오늘 오후 3시부터 개최한 의정체험은 외도·백록초등학교 어린이회 11명이 의장, 의사담당관, 도지사, 교육감 등의 각자 역할을 맡아 보고사항 보고, 도정 · 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 표결 등 모의의회를 직접 진행하였다. 이 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모의의회 진행모습을 참관하며, 보완 개선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 기회를 가졌다.
-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이상봉 의원은 “오늘 의정체험으로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학생과 학부모님이 함께하는 자리라서 더욱 의미있는 체험이었다”고 말했다.



—
IV
—

최근 제·개정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14호, 2024. 2. 13.,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구매를 제한입찰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등의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며,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입찰 대상 계약 추가(제20조제1항제10호나목 신설)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나. 수의계약 대상 계약 추가(제25조제1항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 신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및 우수제품 등의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사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 완화(제73조제6항)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의 요건을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에서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로 완화함.

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규정 정비(제111조)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관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등이 과징금 부과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제114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와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두고,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며,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와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21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중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을 "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에 10)부터 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 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 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 제25조제1항제7호의2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차목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제73조제6항 중 "100분의 1을"을 "1000분의 5를"로 한다.
- 제74조제3항 중 "조정금액"을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 제92조의5부터 제92조의1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7장의 제목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 제106조의2제4호 중 "제92조의7제1항"을 "제116조의2제1항"으로 한다.
- 제107조제6항 전단 중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을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 제111조의 제목 "(재심청구 등)"을 "(심의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재심청구"를 "심의요청, 재심청구"로 한다.
-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 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 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심의)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심사·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사건의 당사자"를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 "당사자의"를 "부정당업자 또는 당사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사건의 당사자"를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당 사건의 청구인등"을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등"으로 한다.

제118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같은 항 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 같은 항 제7호의2라목, 같은 항 제8호차목,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208호, 2024. 2. 6.,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22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광고시간을 제한하는 매체의 범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하는 등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추가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해당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한 영양·위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영양·위생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208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텔레비전방송광고"를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이하 "텔레비전방송"이라 한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으로 한정하며, 이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라 한다)을 이용한 광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텔레비전방송광고 제한시간"을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로 한다.

1.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

제12조의2의 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작성"을 "작성 및 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식재료 등의 구매·검수·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라.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교육 및 지도

제1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위생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비용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6.] [대통령령 제34178호, 2024. 2. 6.,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합리성·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자치구가 5억원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그 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 정 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178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단서 중 "없는다"를 "없거나 출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기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기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군·구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1호, 2024. 2. 13.,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에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 정 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261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계획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2. 1.] [대통령령 제34156호, 2024. 1. 23.,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법령상 근거 규정과 그와 관련된 규정을 존치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고등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은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등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 보 정 정

○ 대통령령제34156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0673호(2024. 01. 23.) 에 게재된 대통령령제34156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법제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p>제91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106조의3제1항제11호 중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제82조 및 제82조의2"로 한다.</p>	<p>제91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105조의7 중 “제91조의3제4항”을 “제91조의3제6항”으로 한다.</p> <p>제106조의3제1항제11호 중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제82조 및 제82조의2"로 한다.</p> <p>제106조의4제1항제3호 중 “제91조의3제4항”을 “제91조의3제6항”으로 한다.</p>	<p>관보 제20673호제195쪽 제20행 아래 및 22행아래에 각각 제105조의7 개정문 및 제106조의4제1항 제3호 개정문 추가</p>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4156호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494호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76조의3제1호 · 제4호,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3항, 제81조의2, 제82조제2항 · 제6항, 제84조제2항 · 제3항 · 제5항 · 제7항, 제86조제1항 · 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1항 · 제3항 · 제5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105조의2제1항 · 제2항, 제105조의3제1항, 제105조의4의 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105조의5, 제105조의7, 제106조의3제1항, 제106조의4제1항 및 대통령령 제21375호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부분을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0494호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본문 중 "2025년 3월 1일부터"를 "2024년 2월 1일부터"로 하고, 같은 부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학한 자(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를"을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제9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학교(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6.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⑤ 교육감은 제4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1조의3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한 사람의 수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교육감은 제6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1조의3제9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⑨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8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1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6조의3제1항제11호 중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제82조 및 제82조의2"로 한다.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 중 "대해서는"을 "대해서는 2024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까지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모집의 특례 대상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1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 운영 성과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제5호 및 제91조의3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9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부칙 제4조에 따라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2025학년도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제9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3) 중 "제91조의3제4항"을 "제91조의3제6항"으로 한다.



V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적 목적 및 지역 특성 반영 등을 위한 주차 요금 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려 하는데,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범위와 조례 개정 가능성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의견23-0452, 2024. 1. 22., 인천광역시 중구]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주차장법」 제9조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인천광역시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가목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소지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는 주차요금의 감면 사유와 감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인천광역시조례 제5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인천광역시조례 제5조에 제12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의 범위나 내용을 알기 어려워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된 중요사항인 감면율에 관한 사항도 전혀 규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생략)
2. ~ 13. (생략)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④ (생략)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생략)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 ④ (생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생략)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집행기관의 부서가 해당 건의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제5조제2항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집행기관의 부서가 해당 건의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4-0003, 2024. 1.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제2조에서 “건의안”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고, “결의안”이란 의원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건의안등”이라 한다)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행기관의 부서가 채택건의안등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회 의원 개인으로서의 발의권·질문권·토론권·표결권·원구성선거권 등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참조) 채택건의안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행기관의 부서가 채택건의안등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표지설명



충남도의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촉구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5년간 매립·소각된 폐기물 62% 수도권서 반입” -
 - 모든 폐기물에 대한 반입협력금 부과 및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현실화 주장 -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38만여 톤이었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1년에는 54만여 톤으로 42%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각 지자체는 지역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발생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자구노력 없이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처리하고 있어 폐기물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5년간 충청도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중 62.5%(194만 1342톤)가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확인됐다”며 “인구가 적고 지가가 저렴한 농촌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문제는 민간업체의 부실한 설치·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건강과 재산,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 12월 28일부터 실시하는 ‘관할구역내 책임처리제’는 생활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폐기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사업장 폐기물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매립지 폐쇄 후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 정 정 보

- ❖ 발 행 월 : 2024년 2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